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915호
2023. 10. 6.(금)



목 차

◆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제2023-2846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제2023-2847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

◆ 공 고

제2023-2811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명령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9
-------------	-----------------------------------	---

◆ 정 정

제8949호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정정)	11
--------	---	----

자치법규 등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846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시장

1. 개정이유

민선8기 시정 실행력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수립 중심에서 도시공간에 대한 효율적 기획·조정을 위해 ‘도시계획국’ → 「도시공간본부」로 확대 개편

- 도시공간계획 수립·조정·시행 등 도시공간 혁신 사무 신설
- 도심활성화 및 서울 전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관한 사무 이관
(← 균형발전본부)

나. ‘상수도사업본부’ → 「서울아리수본부」 명칭 변경

- 공급자 관점의 정책적·기능적 명칭에서 시민친화적인 명칭으로 변경하고 상수도 종합계획 ‘아리수2.0’의 성공적 추진 동력 확보

다. 그밖에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실국간 사무 조정

- 갈등관리 실효성 제고 위해 갈등관련 사무 이관 (행정국 → 기획조정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시장(참조: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kyoni05@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계획국” 을 “도시공간본부” 로 한다.

제5조제10호 중 “평가” 를 “평가, 갈등관리” 로 한다.

제13조제5호 중 “사회협력 및 갈등관리” 를 “사회협력” 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도시계획국)” 을 “(도시공간본부)” 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계획국장” 을 “도시공간본부장”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
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시공간계획 수립·조정·시행에 관한 사항
4. 도심활성화 및 서울 전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제18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제4장제2절의 제목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를 “서울아리수본부” 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를 “서울아리수본부” 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상수도사업본부” 를 “서울아리수본부”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도시계획국” 을 “도시공간본부” 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1항제5호 중 “도시계획국장” 을 “도시공간본부장” 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항제1호 중 “도시계획국장” 을 “도시공간본부장” 으로 한다.
- ④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3항제1호 중 “도시계획국장” 을 “도시공간본부장” 으로 한다.
- ⑤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3항 중 “도시계획국장” 을 “도시공간본부장” 으로 한다.
- ⑥ 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2항제4호 중 “도시계획국장” 을 “도시공간본부장” 으로 한다.
- ⑦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0조제2항 중 “도시계획국장” 을 “도시공간본부장” 으로 한다.
- ⑧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3조제1항제4호다목 중 “상수도사업본부” 를 “서울아리수본부” 로 한다.
- 제33조제1항제9호가목 중 “도시계획국” 을 “도시공간본부” 로 한다.
- ⑨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을 “서울아리수본부장” 으로 한다.
- ⑩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을 “서울아리수본부장” 으로 한다.
- ⑪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2항제1호나목 중 “상수도사업본부” 를 “서울아리수본부” 로 한다.
- ⑫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을 “서울아리수본부장” 으로 한다.
- ⑬ 서울특별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4항제2호 중 “상수도사업본부장” 을 “서울아리수본부장” 으로 한다.
- ⑭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를 “서울아리수본부” 로 한다.
- ⑮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3항 중 “행정국장” 을 “기획조정실장” 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847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1. 개정이유

민선8기 시정 실행력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총정원 변동없이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사업반’ (4·5급)을 ‘동남권사업과’ (4급)로 재편하여 일반직 정원 조정 (4·5급 △1 → 4급 +1)

나. 문화본부 박물관과의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및 ‘보이는 수장고’ 사무 관련 연구직 학예연구사 2명 증원

－ (일반직) 5급이하 △2 → (연구직) 연구사 +2

다. 정책수요에 적시 대응 등을 위해 ‘전문경력관’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상향 조정 (1.5% → 1.6%, +0.1%p)

－ 향후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전문경력관 추가 지정을 위해 8·9급 정원비율을 축소하고 전문경력관 정원 비율 상향 조정

▶ 8·9급(이상) : 7.0% → 6.9% (△0.1%p)

전문경력관(이내) : 1.5% → 1.6% (+ 0.1%p)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0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서울특별시(참조 : 조직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서에 기재할 사항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2)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
- 이메일 : kyoni05@seoul.go.kr
- 온라인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

※ 이 입법예고문 및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서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의 개정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표 중 1. 일반직공무원의 비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율	3.5%이내	16.5%이내	37.0%이내	34.5%이내	6.9%이상	1.6%이내
----	--------	---------	---------	---------	--------	--------

별표 4의 표 중 일반직 계란, 4급란, 4·5급란, 5급 이하 소계란, 연구직 계란, 연구사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일반직 계	10,700					
-------	--------	--	--	--	--	--

4급	259	154	19	8	70	8
4·5급	8	8				
5급 이하 소계	10,220					

연구직 계	410					
-------	-----	--	--	--	--	--

연구사	337					
-----	-----	--	--	--	--	--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3-2811호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명령 사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및 제13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해산명령)을 사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등기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1조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

1. 공고기간 : 2023. 10. 6. ~ 2023. 10. 13.
2. 공고대상 : 서울경인지류코팅공업협동조합 외 8개소

구분	연번	조합명	주 소	휴면 지정 일자
해산 명령	1	서울경인지류코팅 공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25	2022.6.2.
	2	서울중동부수퍼마켓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5길 19, 108호	
	3	서초강남수퍼마켓 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23, 양곡도매시장 지하3-1호	
	4	강동주양쇼পি시장 사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48	
	5	남대문엑세서리 사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중구 남창동 49-3, E동 4층 남문	
	6	문정가든파이브진흥 사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송파구 총민로 66, 패션관동 11층 자산관리사무실	
	7	서울강남서초화훼 사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35-5, 드림타운 지하	
	8	서울중장비부품 사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66, 대일빌딩 3층 302호	
	9	서울혁신식품 사업협동조합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몰 2관 3층	

3. 공고내용 : 중소기업협동조합 해산명령 사전 통지

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2조 제2항에 따라 휴면 지정 후 1년이 경과되었으나 활동 재개가 없는 협동조합(9개)에 대해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2023.10.30.(월) 해산명령 조치할 예정입니다.

나. 위 해산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자료를 2023.10.2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협동조합은 해산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료 제출처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9층 경제정책과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이신혁 주무관(02-2133-5256)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 정

◆ 서울특별시조례 제8949호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정정)**

서울시보 제3913호(2023. 10. 4.)에 게재된 서울특별시조례 제8949호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중 정정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공포안을 정정합니다.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2023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조례 제8949호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류 중독 예방 교육(이하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최근 비대면 마약거래가 지능적으로 발전하면서 SNS 사용이 활발한 10대 청소년들이 마약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2017년 119명이었던 10대 마약 사범 수가 2021년 450명으로 4배 넘게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의 위험성과 중독에 대한 예방책은 부족한 상황임.
- 이에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 실시’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명시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10대 청소년의 마약 중독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청소년 마약 중독예방교육’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마약 중독예방을 위한 시장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